



# 의령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# 공보

제259호 2012. 1. 31(화)

선  
람

기관의장

## 고시

- 의령군 고시 제2012-1호 군관리계획(공간시설:문화공원) 실시계획인가 고시 ----- 1
- 의령군 고시 제2012-2호 의령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 고시 ----- 2
- 의령군 고시 제2012-3호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----- 5

## 공고

- 의령군 공고 제2012-16호 의령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----- 6
- 의령군 공고 제2012-33호 소하천경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----- 7
- 의령군 공고 제2012-35호 2011년도 하반기 정책실명제 등록사항 공표 ----- 8
- 의령군 공고 제2012-64호 행정처분 사전통지서(첨문실시 통지)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-- 13
- 의령군 공고 제2012-70호 의령군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----- 14
- 의령군 공고 제2012-76호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추경업체 공시송달 공고 ----- 16
- 의령군 공고 제2012-77호 2012년 숲가꾸기(소나무재선 충병 패개충 서식환경개선)  
사업 시행공고 ----- 17

(다음면에 계속)

회  
람

▲ 발행 : 의령군 ▲ 편집 : 기획감사실 (055) 570-2410, 행정 2410 FAX(055) 570-2040

## 군관리계획(공간시설:문화공원) 실시계획인가 고시

-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-36(2007.07.24)호 군관리계획(공간시설:문화공원)로 결정된 의령군 정암리 404-1번지 일원의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공사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실시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- 관계도서는 의령군청 건설도시과(☎055-570-2730)에 비치하오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.

2012. 01. .

### 의령군수

- 사업시행지의 위치 : 경상남도 의령군 정암리 404-1번지 일원
-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종류 : 군관리계획(공간시설 :문화공원)
  - 명칭 :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
-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
  - 사업의 면적 및 규모 : 문화공원 A = 6,754m<sup>2</sup>
-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  - 주소 :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
  - 성명 : 의령군수
-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
  - 사업의 착수 :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
  - 준공 예정일 : 2012년 12월 31일
-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 : 불임참조
- 관계도서 : 실음생략(의령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)

## 의령군 고시 제2012 - 2호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5조제2항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, 「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」 제26조 제3항에 따라 의령군 가스시설 검사권한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.

2012년 1월 일

## 의령군수

### 의령군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 고시

**제1조(목적 및 적용범위)** 이 고시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36조 제2항,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 제42조제3항, 「도시 가스사업법」 제45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 관내에 설치된 가스시설 검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가스시설 검사권한 위탁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권한 위탁업무)**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25조제2항 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」 제19조제4항, 「도시 가스사업법 시행령」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 위탁하는 가스시설 검사업무는 【별표1】과 같다.

**제3조(권한 위탁기관)**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 검사권한은 「고압 가스안전관리법」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검사기관, 공인검사기관에 위탁한다.

**제4조(검사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)** ① 위탁받은 기관은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, 위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  
② 군수는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.  
③ 권한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위탁받은 기관에 있다.  
④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위탁 받은 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.  
⑤ 군수는 권한 위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위탁사무 처리상황을 제출받거나 감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**제1조(시 행 일)**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이 고시 시행이전에 검사 신청된 사항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며,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가스관계법령과 지식경제부 고시 및 지침에 따른다.

**제3조(폐지)** 종전의 의령군 고시 제2010-41호(2010.12.22.)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
**【별표1】**

**위탁하는 가스시설 검사의 업무 범위**

법령구분	위탁기관	위탁 검사 업무
「고압가스안전 관리법」	한국가스 안전공사	<p>○ 시행령 제25조제2항제1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중 가연성 가스 또는 독성가스 외의 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냉·난방용 냉동제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</li> </ul>
	공인검사 기관	<p>○ 시행령 제25조제2항제2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냉동기 및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특정설비의 검사</li> </ul>
	전문검사 기관	<p>○ 시행령 제25조제2항제3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용기 및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설비의 재검사</li> </ul>
	한국가스 안전공사	<p>○ 시행령 제25조제2항제4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</li> </ul>
「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」	한국가스 안전공사	<p>○ 시행령 제19조제4항제3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정기검사</li> </ul>
「도시가스사업법」	한국가스 안전공사	<p>○ 시행령 제26조제3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</li> </ul>

##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

「공직선거법」 (제60조의3제3항) · (제111조제3항)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2년 1월 일

## 의령군수

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	전산자료 복사본 비용	비 고
60원/1매(A4용지) 240원/1매(라벨용지)	4,000원 (CD 1개, A4용지 100매)	

## 의령군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

의령군 화정면 석천리 122-1번지 일원 의령군계획시설(수도공급설비) 『화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』이 완료되어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. 01. .

### 의령군수

1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의령군 화정면 석천리 122-1번지 일원

2. 완료된 사업의 종류 및 사업명

종 류	사 업 명	사업개요	사업기간	비 고
의령군계획시설 (수도공급설비)	화정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	수도공급설비 $A=8,271\text{m}^3$	2008.07 ~ 2010.06.28	

3. 사업의 시행자 주소 및 성명 : 경남 의령군 의령읍 중동리 261-1번지 의령군수

4. 공사와 관련한 문의장소 : 의령군청 환경수도과 상수도담당(☎055-570-2580)

의령군공고 제2012-33호

### 소하천정비사업 시행계획의 공고

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의령군 소하천정비 사업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01월 일

의령군수직인

소하천명	공사명	사업개요							비고	
		공사위치		사업량(m)			공사기간			
		시점	종점	축제	호안	기타	착공	준공		
계	2개소									
만천천	만천소하천 정비사업	의령읍 만천리 909-10	의령읍 만천리 780	-	931m	소하천 시설물 1식	2012. 1.	2012. 7.	소하천정비	
엄현천	엄현소하천 정비사업	유곡면 칠곡리 54	유곡면 칠곡리 71	-	326m	소하천 시설물 1식	2012. 1.	2012. 7.	소하천정비	
이하	빈칸									

#### 열람서류

- 실시설계도서
- 위치도(축척 50,000분의 1 지형도)

## 2011년도 하반기 정책실명제 등록사항 공표

『의령군 정책실명제 운영규칙』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 
2011년도 하반기 정책실명제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12년 1월 일

의령군수

## '11. 하반기 정책실명제 공표내역

등록번호	등록일자	정책명	주요 내용	소관부서
100	'11.08.02.	의령군 군립공원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결정 : '11.08.02</li> <li>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령군 군립공원 위원회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</li> <li>- 입장료 미징수 근거 마련 등 미비점 개선 · 보완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련공무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안자 : 공원녹지주무관 노현석</li> <li>- 중간검토자 :과장 문일권</li> <li>- 최종결재자 : 군수 김채용</li> </ul> </li> </ul>	산림녹지과
101	'11.08.02.	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결정 : '11.08.02</li> <li>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군관리계획(제2종산업형 지구 단위계획) 결정(변경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A=51,266m<sup>2</sup>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련공무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안자 : 도시계획주무관 전종훈</li> <li>- 중간검토자 : 과장 심영근</li> <li>- 최종결재자 : 군수 김채용</li> </ul> </li> </ul>	건설도시과
102	'11.09.16.	의령군계획조례 일부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결정 : '11.09.16</li> <li>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녹지지역, 관리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단독주택, 공동주택, 균린생활시설은 개발 행위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</li> <li>- 녹지지역, 보전관리지역, 생산관리 지역, 농림지역,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전통사찰, 지정문화재, 등록문화재, 한옥의 건폐율 20% ⇒ 30% 상향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련공무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안자 : 도시계획주무관 전종훈</li> <li>- 중간검토자 : 과장 심영근</li> <li>- 최종결재자 : 군수 김채용</li> </ul> </li> </ul>	건설도시과

등록번호	등록일자	정책명	주요내용	소관부서
103	'11.08.04	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결정 : '11.08.04.</li> <li>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우기철의 집중호우 시 의령읍 시가지내 내수로 인한 잦은 침수피해를 겪고 있어 원활한 우수 배제를 위한 저류시설을 설치하여 유량의 도달시간을 자연시킴으로서, 우수집중 현상을 차단하고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유수지 신설</li> <li>• 부림면 신반리 신반(서동) : 면적(A)= 2,297m<sup>2</sup></li> <li>• 부림면 신반리 신반(중동) : 면적(A)= 1,717m<sup>2</sup>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련공무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안자 : 도시계획주무관 전종훈</li> <li>- 중간검토자 :과장 심영근</li> <li>- 최종결재자 : 군수 김채용</li> </ul> </li> </ul>	건설도시과
104	'11.08.02	의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결정 : '11.08.02</li> <li>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의거 흡연으로 인한 폐해로부터 군민을 보호</li> <li>- 금연구역지정(안제2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「학교보건법」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</li> <li>• 다중이 이용하는 버스 및 택시 승강장</li> <li>• 그 밖에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</li> </ul> </li> <li>- 과태료 (안 제10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련공무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안자 : 건강증진주무관 성미자</li> <li>- 중간검토자 : 소장 강덕규</li> <li>- 최종결재자 : 군수 김채용</li> </ul> </li> </ul>	보건소

등록번호	등록일자	정책명	주요내용	소관부서
105	'11.11.18.	의령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포일자 : '11.11.18.</li> <li>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조례의 제정목적과 조례에 사용된 주요 용어에 대하여 정의 (안 제1조, 안 제2조)</li> <li>- 비용추계 작성대상과 제외대상을 규정(안 제3조, 안 제4조)</li> <li>- 비용추계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추계 기간을 규정(안 제5조)</li> <li>- 재원조달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재원조달방안 작성에 대하여 규정(안 제6조)</li> <li>- 추계서의 작성부서와 제출시기를 규정(안 제7조)</li> <li>- 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 조례규칙 심의회 안건 상정 시 첨부하여 제출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련공무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안자 : 법무통계주무 박경혜</li> <li>- 중간검토자 : 실장 이성규</li> <li>- 최종결재자 : 군수 김채용</li> </ul> </li> </ul>	기획감사실
106	'11.11.18.	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채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일자 : '11.11.18</li> <li>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의령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·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여 근로자 및 하도급 업체를 보호코자 함</li> <li>- 적용대상 : 일천만원 이상의 공사 및 용역,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</li> <li>- 기타사항 :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련공무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안자 : 의령군의원 전병원</li> <li>- 중간검토자 :과장 표상학</li> <li>- 최종결재자 : 군수 김채용</li> </ul> </li> </ul>	재무과

등록번호	등록일자	정책명	주요내용	소관부서
107	'10.11.04.	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일자 : '11.11.18</li> <li>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「유통산업발전법」 및 「의령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통상업 보존구역 범위 확대 :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 → 1km 이내</li> <li>- 의령군 전통상업 보존구역의 범위를 확대 지정함으로써 해당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.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련공무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안자 : 상공주무관 이홍열</li> <li>- 중간검토자 : 과장 하만홍</li> <li>- 최종결재자 : 군수 김채용</li> </ul> </li> </ul>	건설도시과
108	'11.11.18.	의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조례 일부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일자 : '11.11.18</li> <li>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"100분의 30이상"에서 "100분의 15이상"으로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 제74조에 규정한 사항으로 하며, "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"을 추가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련공무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안자 : 하천주무 김대훈</li> <li>- 중간검토자 : 과장 최태만</li> <li>- 최종결재자 : 군수 김채용</li> </ul> </li> </ul>	재난관리과
109	'11.12.19	의령군벽계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시행결정 : '11.12.19</li> <li>○ 주요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장료 면제자 추가(제5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. 상이군경, 국가유공자, 장애인</li> </ul> </li> <li>- 시설사용 요금(제4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. 별표1, 별표2 (별첨)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○ 관련공무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입안자 : 문화관광주무관 김숙영</li> <li>- 중간검토자 : 과장 하영청</li> <li>- 최종결재자 : 군수 김채용</li> </ul> </li> </ul>	문화체육과

## 행정처분 사전통지서(청문실시 통지)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10조 및 같은 법 제83조제2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 미달(보증가능금액 실효)된 전문건설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앞서 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 통지)를 발송하였으나 이사 감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,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.

2012. 01. .

### 의령군수

#### 1. 대상업체

상호 (대표자)	주소	처분업종 (등록번호)	예정된 처분의 제 목	처분원인
동원건설(주) 이정미	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04-7	석공사업 (의령2002-04-07)	영업정지 (4월)	- 보증가능금액 실효 (2011.08.02)
(주)휴먼건설 박상용	경남 의령군 지정면 봉곡리 773-1	상하수도설비공사업 (울산남구2004-13-02)	등록말소	- 보증가능금액 실효 (2010.12.03) - 공사실적기준미달 (2008~2009)

2. 공고기간 : 2012.01.20 ~ 2012.02.04(15일간)

#### 3. 청문일정

- 가. 청문일시 : 2012.02.07.(화) 14:00 ~
- 나. 청문장소 : 의령군청 4층 상설감사장
- 다. 청문주재자 : 의령군청 기획감사실 법무통계담당 이상호

#### 4. 청문 시 유의사항

- 가.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- 다.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라.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령군 건설도시과 건설행정담당 ☎ 055-570-27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의령군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

- 경상남도 고시 제2008-53(2009.01.29)호 의령군계획시설(체육시설 : 화정골프장)로 결정된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산28-2번지 일원의 「화정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」의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.
- 본 의령군계획시설(체육시설:화정골프장) 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령군청 건설도시과(☎055-570-2730)로 열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2년 01월 일

## 의령군수

- 사업시행지의 위치
  -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덕교리 산28-2번지 일원
- 사업의 종류 및 명칭
  - 종 류 : 의령군계획시설(체육시설 : 화정골프장)
  - 명 칭 : 화정 대중 골프장(18홀) 조성사업
- 사업시행 면적 또는 규모
  - 사업의 면적 : 체육시설 A=882,600m<sup>2</sup>
-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  - 성 명 : 하성원개발(주) 김정희
  - 주 소 : 경상남도 진주시 옥봉동 807-6번지

5.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

- 사업의 착수 :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
- 준공예정일 : 2015년 01월 30일

6. 열람의 일시 및 장소

- 열람일시 : 공고 다음 날로부터 20일간
- 열람장소 : 의령군청 건설도시과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· 지번 · 지목 및 면적, 소유권과  
소유권 외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· 권리자의 성명 · 주소 : 불임참조
8. 관계도서 : 실음생략(의령군청 건설도시과에 비치)

## 건설업등록기준 미달 추정업체 공시송달 공고

재단법인 건설산업정보센터로부터 건설업등록기준 미달(기술능력, 보증가능금액, 시설장비 등) 추정업체로 통보되어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 제출을 통지 한 바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2. 1. .

## 의 령 군 수

### 1. 대상업체

상 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	영업 소재지	등록업종 (등록번호)	등록기준 소명자료 제출목록	비고
동원건설(주) 이정미 194511-*****	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04-7	석공사업 (의령2002-04-07) 철근콘크리트공사업 (의령2002-10-07)	- 기술능력 - 시설장비(사무실 등) - 보증가능금액확인서	

2. 공고기간 : 2012. 1. 31 ~ 2012. 2. 13(14일간)

3. 공고 장소 : 게시판, 홈페이지, 군 공보

4.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자료(기술능력 등)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『건설산업기본법』 제82조 제1항 제4호(영업정지 등)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예정입니다.

5. 기타 문의사항은 의령군청 건설도시과(055-570-270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 2012년 숲가꾸기(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환경개선)사업 시행공고

2012년 숲가꾸기(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환경개선)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주의 소재 불명 등으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와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1월 일

### 의령군수

- 사업명 : 2012년 숲가꾸기(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서식환경개선)사업
- 소재지 : 의령군 화정면, 용덕면, 정곡면, 지정면 지내
- 사업면적 : 1,150㏊(불임 사업대상지 조서 참조)
- 사업기간 : 2012. 2월 ~ 2012. 4월
- 공고기간 : 2012. 1. 31 ~ 2012. 2. 19(20일간)
- 산물처리 : 벌채한 소나무 전량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해 방제처리(훈증, 파쇄)하며, 이 장소에서 발생한 소나무류는 전량 반출 금지함.
- 경과조치 : 위 기간까지 별다른 통보가 없을 경우 이해 관계자로 부터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시행함.

\*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(055-570-2653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불임 : 2012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 조서 1부. “끝”